

월간 주요 이슈

한국소비자원 보도자료(2024. 1. 12.)

일부 어린이제품 제작 뜨개질 키트, 노닐페놀 등 유해물질 검출

- 조사대상 전 제품이 KC 안전인증 받지 않아 -

- 한국소비자원(원장 윤수현)이 시중에 유통 중인 유·아동용 제품 뜨개질 키트 28개를 조사한 결과, 전 제품이 안전 인증을 받지 않았으며 이 중 일부 제품은 유해물질이 검출되거나 물리적 안전성이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
- 조사대상 28개 제품 중 4개 제품에서 안전기준 초과한 유해물질 검출
 - 조사대상 28개 제품 중 2개 제품(원사)에서 안전기준을 초과하는 노닐페놀이 검출, 2개 제품의 부자재(단추, 방울)에서 납 성분이 검출, 이 중 1개 제품에서는 프탈레이트계 가소제도 검출됐다.
 - 노닐페놀 : 노출될 경우 생식기 발달장애 유발 가능
 - 납 : 어린이 지능 발달 저하, 식욕부진, 빈혈, 근육약화 등을 유발할 수 있음.
 - 프탈레이트계 가소제 : 노출 될 경우 간 · 신장 등의 손상 유발 가능
- 완성품을 어린이가 사용하는 뜨개질 키트는 안전 인증 받아야
 - 유 · 아동의 신발 · 모자 등을 소비자가 직접 만들 수 있도록 고안된 어린이제품 뜨개질 키트는 최종 완성품의 주 사용자가 만 13세 이하 어린이라면 「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에 따라 품목별 안전기준에 적합함을 확인 후 신고 · 표시해야 하지만, 조사대상 전 제품이 인증을 받지 않았다.
- 일부 제품, 삼킴 · 질식사고 방지를 위한 물리적 기준을 충족하지 않아
 - ‘코드 및 조임끈’이 있는 섬유제품은 모두 안전기준을 벗어났으며, 또한 작은 부품을 포함하는 1개의 제품은 ‘작은 부품 부착강도’가 안전기준에 부적합했으며, 유아용 노리개 젓꼭지 걸이 제품 4개는 모두 공기구멍이 없어 유아가 입에 넣을 경우, 질식사고의 위험이 있었다.
- 한국소비자원은 이번 조사결과를 바탕으로 28개 미인증 제품 판매사업자에게 판매 중지 등 시정을 권고하는 한편, 관계부처에 조사 결과를 공유하고 뜨개질키트에 대한 관리 · 감독 강화를 요청할 예정이며, 아울러 소비자에게는 어린이 제품 뜨개질 키트 구매 시 KC 안전인증마크를 확인할 것, 뜨개질 키트 선택 및 제작 주의사항(붙임 참고)에 유의할 것 등을 당부했다.

❖ [참고] 일반현황

- 국내 관련 규정 : 「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법률 제18819호, 2022. 2. 3.)
 - (어린이제품) ‘어린이제품’이란 만 13세 이하의 어린이가 사용하거나 만 13세 이하의 어린이를 위해 사용되는 물품 또는 그 부분품이나 부속품을 말함.
 - 따라서 성인이 직접 제작하더라도 완성 제품이 만 13세 이하 어린이를 주 대상으로 하고 ‘안전관리 대상 어린이제품’에 해당하는 경우 개별안전기준 및 어린이제품 공통안전기준을 모두 준수하여야 함.
 - (섬유제품 안전기준) 36개월 미만의 영·유아가 사용하는 섬유제품과 36개월 이상 만 13세 이하의 아동이 사용하는 섬유제품은 각각 안전확인대상 및 공급자적합성확인대상 어린이제품으로 분류되어 각각의 안전기준에서 요구하는 안전요건을 준수해야 함.

※안전확인기준 부속서 1(유아용 섬유제품) 및 공급자적합성 안전기준 부속서 15(아동용 섬유제품)

[유 · 아동용 섬유제품 안전요건(일부 요약)]

구분	항목	안전요건	
		유아용 섬유제품 (36개월 미만)	아동용 섬유제품 (36개월 이상 ~ 만 13세 이하)
물리적 안전요건	코드 및 조임끈	EN14682* 에 적합할 것 *유럽표준으로, 유·아동복에 사용하는 코드 및 조임끈의 안전기준	
	작은부품 부착강도	탈락되지 않을 것 (부착강도 기준치 : 50N±2N**) **힘의 단위로 Newton을 의미	-
유해물질 안전요건	총 납 함유량 (mg/kg)	100 이하(페인트 및 표면코팅의 경우 90 이하)	
	총 카드뮴 함유량 (mg/kg)	75 이하	
	프탈레이트계 가소제 총함유량(%)	0.1 이하	
	폼알데하이드 (mg/kg)	20 이하	75 이하
	아릴아민 (mg/kg)	각각 30 이하	
	노닐페놀(NP, NPEO) 총함량 (mg/kg)	100 이하	
	pH	4.0~7.5	

- **(완구)** 완성제품이 놀이 목적이 있는 공예품*, 인형과 같이 부드러운 것으로 채워진 충전완구는 안전 확인 안전기준 '완구'에 따른 안전요건을 준수해야 함.

*바느질 세트, 구슬꿴기, 만들기세트, 모형제작물, 스탬프, 그림그리는 도구 등

※안전확인기준 부속서 6(완구)

[완구 안전요건(일부 요약)]

구분	항목	안전요건
물리적 안전요건	작은부품	(36개월 미만) 어린이제품 및 분리 가능 부품은 어떤 방향에서도 작은 부품 실린더에 완전히 들어가서는 안됨.
유해물질 안전요건	총 납 함유량(mg/kg)	100 이하(페인트 및 표면코팅의 경우 90 이하)
	총 카드뮴 함유량 (mg/kg)	75 이하
	프탈레이트계 가소제 총함유량(%)	0.1 이하
	폼알데하이드 (mg/kg)	30 이하 (3세 미만의 어린이가 사용하는 완구의 접근 가능한 섬유 부분의 경우)

- **(유아용 노리개 젓꼭지 걸이)** 영.유아의 옷 등에 노리개 젓꼭지를 고정할 수 있게 하는 제품은 안전확인 안전기준 '합성수지제 어린이용품' 중 '제3부 유아용 노리개 젓꼭지 걸이'에 따른 안전요건을 준수해야 함.

※ 안전확인기준 부속서 2(합성수지제 어린이용품) 제3부 : 유아용 노리개 젓꼭지 걸이

[유아용 노리개 젓꼭지 걸이 안전요건(일부 요약)]

구분	항목	안전요건
물리적 안전요건	작은부품	- 최소 2개의 공기구멍이 있어야 하고, 구멍들의 총면적은 최소 40mm ² 이고, 각각의 구멍은 지름 4mm 탐침봉이 방해받지 않고 구멍이 있는 재료 자체의 두께를 통과할 수 있어야 함. 또는 지름 12mm 탐침봉이 방해받지 않고 구멍이 있는 재료 자체의 두께를 통과할 수 있는 하나의 공기구멍, 또는 지름 4mm 탐침봉이 방해받지 않고 구멍이 있는 재료 자체의 두께를 통과할 수 있는 최소 115mm ² 면적의 하나의 공기구멍 - 공기구멍이 있어야 하는 의류부착 기구가 지름 25mm의 원형을 포함하는 임의의 표면적이 있는 경우, 이 표면적에 최소 하나의 공기구멍이 있어야 함.
유해물질 안전요건	총 납 함유량(mg/kg)	300 이하(페인트 및 표면코팅의 경우 90 이하)
	총 카드뮴 함유량 (mg/kg)	75 이하
	프탈레이트계 가소제 총함유량(%)	0.1 이하
	폼알데하이드(mg/kg)	20 이하